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8834 발의연월일 : 2025. 3. 12.

발 의 자:김형동·김소희·조경태

우재준 • 임종득 • 배준영

박덕흠 · 강대식 · 임이자

박정하 • 조지연 • 권영진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현행법의 이행강제금에 관하여「행정기본법」과의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 및 제47조제3항 신설 등).

법률 제 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에 제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3(이행강제금) ① 환경부장관은 제6조제5항(제9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정보 제공 또는 열람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1억원의 범위에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일 수를 고려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다.

제47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선 생 <u><신 설></u>	제6조의3(이행강제금) ① 환경부 장관은 제6조제5항(제9조의2제 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에 따른 정보 제공 또는 열람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1억원의 범위에서 명령에 따르지 아니 한 일 수를 고려하여 이행강제 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 에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제47조(과태료 등) ① (생 략) ② 제6조제5항(제9조의2제4항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에 따른 정보 제공 또는 열람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마다 1억원의 범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 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다. 제47조(과태료 등) ① (현행과 같음) (삭 제>

위에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일 수를 고려하여 이행강제금 을 부과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